

보도시점 2026.7.20.(월) 10:00

배포 2026.7.20.(월) 7:30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
- 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26.2.19.) 내용: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본인전송 시 안전한 전송방법 규정(자동화 도구를 통한 대리 시 사전협의 필요)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정보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정보전송자와 전송대상 정보, 전송 방식, 보안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은 필요할 때 정보전송자에게 언제든지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본인대상전송정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전송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공기관(정보전송자)과 수요자(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 기간*(6.25.~7.10.)을 운영해 왔다.

* 1차 시범기간 신청현황: 70여개 기업·기관에서 약150건 신청

당초 사전협의 지원 신청 시범운영 기간은 7월 1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기관(대리인)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다 많은 대리인이 원활하게 제도 전환을 준비하여,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전송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추가 운영(7.20.~7.31.)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장기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기관(대리인)에 대해서는 해당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전송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므로,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많은 기업·기관들은 기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사전협의 신청*이 필요하다.

* 신청방법: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로 신청
 ※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 공지사항(7.20.게시):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요청 시범기간 추가운영(7.20.~31.) 안내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며, 사전협의의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사전협의 체계는 운영이 지속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도이행 준비현황을 공유하는 협의회(7.21.화)를 개최하고, 관심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주요내용에 대한 현장 설명회(7.22.수)도 개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신민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이 불편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은 사전협의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안전한 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해 원하는 곳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은경	(02-2100-3170)
		담당자	사무관	장주영	(02-2100-3186)
			사무관	김미애	(02-2100-3172)
			연구원	강아영	(02-2100-3176)

붙임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목록 ('26.5.기준)

- ◇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갖춘 자로 **본인대상정보 전송자** (영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 ※ 보호위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목록 공개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 공공시스템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기관이 처리하는 시스템이 대상이며, 시간, 기술,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에서 **본인전송 이행 가능**

소관부처(29개)	운영기관	소관부처	운영기관
검찰청	검찰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경찰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립암센터
	한국고용정보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관세청	관세청·한국관세정보원		대한적십자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학술정보원·사도교육청(17개)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산업통상부	한국가스공사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국세청	국세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외교부	외교부
	한국부동산원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혁신처
기획예산처	한국재정정보원	조달청	조달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전력공사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일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행정안전부	시·군·구(228개)·지역정보개발원
법무부	법무부		시·도(17개)·지역정보개발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병무청	병무청		행정안전부

1. 이번 제도(8.20.시행, 보호법 시행령)는 스크래핑(자동화 도구)을 전면 금지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안전한 정보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협의 및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의 정보전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API 기반의 통제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2. 8월20일부터 기존 서류 자동제출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은 필요할 때 정보전송자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시범기간을 7월 31일까지 추가운영하였고, 기한내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기관은 협의완료까지는 기존 방식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만으로 즉시 모든 서비스가 일괄 중단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

⇒ 기존 스크래핑 방식은 이용자의 인증정보(ID·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대리인이 위임받아 사용하는 구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외 이용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선은 정보주체가 원하는 정보만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송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4. 본인전송요구권이 확대되면 국민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활용 과정에서 본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강화됩니다. 쉽게는, 내 정보가 꼭 필요한 만큼만 안전한 통로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나 인증서를 통째로 맡길 필요가 없어지므로 인증정보 유출 위험이 낮아집니다.

5. 사전협의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공공기관*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하게 되며, 이는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송받을 것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 전송 대상 정보 범위, ▲ 대리인 여부 확인 방식, ▲ 자동화 도구의 접근 방식과 인증 수준, ▲ 대리인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 방안 등

*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해당

⇒ 사전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와 주요 협의사항을 제도 안내서에 담아 안내하고 있습니다.([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6.6.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법령-안내서)

6. 기업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전협의 참여 및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PI기반 전송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 관련 현장 설명회

□ 개 요

- (배경)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8.20.) 관련, 본인전송요구 대리의 사전협의 관심 기업 대상으로 제도 주요내용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
- (일시/장소) '26. 7. 22.(수), 14:30 ~ 16:30 / 잠실광고회관
- 참석대상
 - (관계부처) 개인정보위(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행안부, 금융위
 - (관심기업) 본인전송요구 대리의 사전협의 관심 기업

□ 주요 내용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 등) 설명
- 본인전송요구 대리의 사전협의 관련 질의·응답

□ 세부 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 고
14:30~14:35 (5)	개 회	
14:35~15:00 (25)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설명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 등)	개인정보위
15:00~16:00 (60)	질의응답 및 의견공유	

※ 진행상황에 따라 시간은 변동 가능